

보다 안전한 미래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우)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수서동, 로즈테일오피스텔 1828호) / Tel 02-567-1307/ Fax 02-567-1337

www.assi.or.kr E-Mail : assi1337@naver.com 담당 : 박용복 국장

문서번호 시험 2020 - 275호

시행일자 2020. 7. 21.

수 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참 조 건설본부장

선			지	
결			시	
접	일자		결	
	시간		재	
수	번호		공	
처	리	과	람	
담	당	자		

제 목 초기점검용역 적정대가 반영 요청

1. 국가기간산업의 건설과 시설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공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2. (1)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초기점검은 위 시행령 같은 조 제8,9항에 의거하여 안전점검의 대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이를 근거로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은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시 영 제100조 8항에 따른 안전점검대가의 세부산출기준을 적용하여 계상토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 이에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고시 제2020-047호, 2020.01.23.)의 제25조(초기점검의 실시), 제27조(안전점검에서의 현장조사 및 실내분석)에서 ‘공사목적물의 외관을 자세히 조사하는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과 초기치를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파괴 재하시험, 구조해석 등 [별표3]의 추가 조사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7조에서 초기점검 비용계상시에는 향후의 유지관리, 점검·진

단을 하기위한 기초자료로서 구조물 자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및 구조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구하는데 필요한 추가항목에 대한 비용을 별도계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귀 공단에서는

(1) 재하시험의 경우 발주시부터 재하시험 대상과 횡수를 정하지 않고 1식(PS)금액으로 하여 공사 완공시점에서 시설물검증시험(교량재하시험)을 실시토록하면서 검증대상을 정하는 등으로 대가와 다른 요구를 함으로써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2) 구조해석의 경우 초기점검은 시설물 완공후에 실시하는 최초의 정밀안전점검으로서 국토교통부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안전성평가 방법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실제 교량상태에 부합되게 모델을 정한 후 실제 시험차량을 하중으로 재하하여 계산된 처짐값을 구하여 내하력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재하시험시 내하력평가를 위한 구조해석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국토해양감사국 제1과-3653호, 2015.11.17.)이나 지금까지 이를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의 발주시에는 1식(PS)단가가 아닌 대상시설물과 재하시험 횡수를 명확하게 계상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토록 하고, 구조해석 비용을 적의 반영하여 부실한 시설물 관리가 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끝.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